

포 상 규 정

<2015. 1. 1. 제정>

<2017.10.13. 개정>

<2018.07.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분야의 교육 그리고 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그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 본 학회의 포상은 학술상, 공로상, 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산학협동상 및 특별상으로 한다. 본 상에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는다.

제3조(학술상) 학술상은 정회원 중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4조(공로상)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2.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 분야의 발전 및 산업화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제5조(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추천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MNSL)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신진연구자상) 신진연구자상은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분야에 관계된 단독 교신저자 논문, 기술개발 사업화 실적 등의 업적을 학술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평가, 심사 후 결정하여 추천한다. 수상자는 매년 1명씩 선발하고, 시상은 학술대회 혹은 총회에서 진행하며, 상금은 2015년 마이크로타스학회에서 기부받은 재원으로 운영하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소진시 재조정한다.

제7조(산학협동상) 산학협동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 및 기술 이전 실적이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특별상) 특별상은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고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분야 학술 및 기술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회원, 인사 또는 기관으로서 상기금을 출연한 후원자 명의의 특별상을 수여한다. 특별한 상기금 출연이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는다.

제9조(수상의 제한) 동일한 상의 수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1. 공로상은 재수상 할 수 없다
2. 학술상은 재수상 할 수 없다.
3. 신진연구자상은 재수상 할 수 없다.
3. 산학협동상은 수상 후 4년 이내에는 재수상 할 수 없다.

제10조(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 추천한다.

1. 학술상 및 공로상은 윤리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2. 논문상은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3. 특별상, 산학협동상은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4. 정회원 3명 공동 명의로 각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논문상 제외)
5. 신진연구자상은 수상일 기준 만 40세 이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하의 조건을 갖춘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회원 중에서 자천 혹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11조(후보자의 추천 절차)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서면으

로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윤리포상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의 종별
2. 수상후보의 성명, 회원의 종별, 근무처 및 직위, 경력, 과거 수상 기록
3. 상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그 개요
4. 추천자의 인적 사항

제12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및 공로상은 윤리포상위원회의 추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2. 논문상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추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3. 특별상, 산학협동상은 산학협동위원회의 추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4. 정회원 3명 공동 명의로 추천된 각 상의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제13조(포상의 수여)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 이름으로 정기총회 석상 및 기타 석상에서 시상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